

머리말

애국적 열정을 호소하던 시대, 이를테면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한 1870년이나 1940년 이후에 일부 역사가들이 그랬던 것처럼,<sup>1)</sup>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든 그 시대의 정신을 중세인들에게 투사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근대의 산물이라는 상식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근대적 정의에 입각하여 중세의 민족감정, 민족의식, 애국심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편견일 것이다.<sup>2)</sup> 블로크(M. Bloch)는, 제2기 봉건시대는 국가의 형성기일 뿐 아니라 “조국이 확인되고 혹은 세워진 시대”라고 말하지 않았던가?<sup>3)</sup>

블로크가 말한 12-13세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백년전쟁기는 확실히 민족감정, 민족의식, 애국심(충성심)과 같은 주제들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시대이다. 베르나르 게네(Bernard Guenée)의 말처럼, 그 전쟁은 처음부터 “민족적 전쟁”이었고, 14세기 초에는 “프랑스인들이 프랑스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sup>4)</sup> 장기간 지속된 전쟁은 그 이전까지 잠재된 민족의식의 맹아들을 싹틔우고, 특히 그에 관한 정치적 담론과 선전을 양산하는 거름이 되었다. 크리스토퍼 올먼드(Christopher Allmand)의 말을 빌리면, “애국적이고 호전적인 열정을 자극하는 기술이 통치술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갔다.”<sup>5)</sup> 많은 애국 문학이 선민의식을 복돋우고 영국인에 대한 적개심과 편견을 조장했다.<sup>6)</sup> 수많은 지적 엘리트들의 정치적 저술에서 민족은 분명히 중심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 엘리트들의 정치적 신념과 선전이 일반 프랑스인들에 의해 얼마나 공유되고 또 그들의 의식에 파고들었는지는 매우 중요하고 흥미롭지만 좀처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사람들의 감정과 의식을 계량적 증거로 밝혀내기란 불가능하고, 많은 문헌들은 기록되는 대상의 감정과 의식보다는 기록자 자신의 그것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영국에 의해 점령된 프랑스, 이른바 ‘영국령 프랑스(La France anglaise)’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저항(résistance)’과 ‘협력(collaboration)’은 당시 프랑스인들의 민족 감정과 의식을 엿보고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프리즘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주로 논의하는 시기는 영국의 프랑스 북서부 점령이 시작된 1417년부터 아르마냐크파(Armagnacs)와 부르고뉴파(Bourguignons)의 대립을 종식시킨 아라스(Arras)조약이 체결된

1) 대표적인 예로는 G. Guibal, *Histoire du sentiment national en France pendant la Guerre de Cent Ans*(Paris, 1871); M.-M. Martin, *Histoire de l'unité française*(Paris, 1949) 등을 들 수 있다.

2) 이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C. L. Tipton ed., *Nationalism in the Middle Ages*(New York, 1972) 참조.

3) 마르크 블로크, 『봉건사회 II』, 한정숙 옮김(한길사, 1986), 246-247쪽.

4) B. Guenée, “Etat et nation en France au Moyen Age”, *Politique et Histoire au Moyen Age*(Paris, 1981), pp. 161-162.

5) C. T. Allmand, *La guerre de Cent Ans*(Paris, 1989), p. 187. 또한 P. Contamine, “Mourir pour la Patrie: Xe-XXe siècle”, éd. P. Nora, *Les lieux de Mémoire: Nation(III)*, pp. 11-43; P. N. Pons, “La propagande de guerre française avant l'apparition de Jeanne d'Arc”, *Journal des Savants*(1982), pp. 191-214; D. Kirkland, “The Growth of National Sentiment in France before the Fifteenth Century”, *Histroy*, vol. 23(1938), pp. 12-24 등을 참조.

6) 대표적인 예로 “꼬리 달린 영국인(Engloiz couez)”, “자기네 왕을 죽이는 족속”...

1435년까지이며, 이 시기 프랑스의 정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415년 아쟁쿠르(Azincourt) 전투와 그에 뒤이은 영국군의 북서부 점령, 그리고 1420년 장차 두 왕국의 왕위를 합치기로 한 트루아(Troyes)조약, 게다가 1419년 몽테로(Montereau)에서 부르고뉴 공작 장 상 피르(Jean sans Peur)가 왕세자의 측근들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된 아르마냐크파와 부르고뉴파의 사이의 내전까지 겹쳐서 왕국은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었다. 영국군의 점령과 내란으로 적어도 ‘세 개의 프랑스들’이 병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리옹에서부터 루아르강을 따라 오를레앙까지, 여기서 다시 멘(Main) 지방을 가로질러 브르타뉴에 이르는 경계 이북은 랭카스터조의 지배 아래 들어간 이른바 ‘영국령 프랑스’와, 부친의 암살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이 왕조의 동맹자가 된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 르봉(Philippe le Bon)의 수중에 있는 영토들--부르고뉴 공작령과 느베르(Nevers), 레텔(Rethel), 아르투아(Artois), 플랑드르(Flandre), 프랑슈콩테(Franche-Comté) 백작령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이남으로는 왕세자(Dauphin, 샤를 7세)의 왕령지와 그의 궁정에 가담한 제후들--오를레앙 공작과 그의 장인인 아르마냐크 백작, 앙주 공작, 부르봉 공작, 프로방스 백작 등--의 봉토들로 모자이크처럼 이루어진 이른바 ‘부르주(Bourges) 왕국’ 또는 ‘아르마냐크파의 프랑스’가 ‘영국-부르고뉴파의 프랑스’와 대치하고 있었다.

## II. ‘저항하는’ 프랑스?

영국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에피소드들은 전쟁 초기 국면에서부터 간간히 이어졌다. 1346년 7월 초순에 생바스트라오그(St.-Vaast-La-Hogue)에 상륙한 에드워드 3세의 군대는 첫 번째 표적이 된 인근의 부유하지만 성벽이 없었던 도시 캉(Caen)을 기습 공격하고 약탈하였으나 “도시 주민들, 원수와 시종장, 그 밖의 많은 귀족들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시내 한복판에서까지 전투가 벌어진 끝에 점령된 도시는 약탈과 방화에 휩싸이고 “많은 남녀가 포로로 끌려갔다.”<sup>7)</sup> 곧이어 크레시(Crécy)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 9월부터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칼레(Calais) 시의 주민들이 이듬해 8월까지 “그들의 말과 시궁쥐와 생쥐까지 잡아먹고 굶주림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며” 1년 가까이 버티다가 항복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sup>8)</sup> 자크리(Jacquerie)의 난 직후인 1359년 보베(Beauvais) 교구의 작은 마을 롱퀘유(Longueil)에서 영국군에 맞서 무장하고 버려진 요새를 점거한 농민들의 수령으로 추대된 기욤 알루(Guillaume l'Aloue)와 그의 심복으로 60여 또는 80여 명의 영국군을 도끼로 쓰러뜨리고 장렬한 최후를 맞은 거인 그랑페레(Grandferré)의 이야기 또한 유명하다.<sup>9)</sup>

국왕 장 2세(Jean II le Bon)가 영국의 포로로 잡혀간 ‘푸아티에(Poitiers)의 재앙’에 이어서 1360년 프랑스 왕위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기옌(Guyenne) 영지를 에워싸는 남서부의 영토와 칼레 등을 영국에 양도하기로 한 브레티니(Brétigny)조약 직후, 영국에 양도되는 여러 지역에서 이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터져나왔다. 케르시(Queurcy)와 루에르그(Rouergue), 페리고르(Périgord)는 영국령으로 편입되는 데 대한 반발이 특히 완강했던 지역

7) *The Chronicle of Jean de Venette*, ed. R. A. Newhall(Columbia Univ. Press, 1953), pp. 40-41.

8) *Ibid.*, pp. 45-46.

9) *Ibid.*, pp. 90-93, 259-260. 연대기작자 장 드베네트는 이 사건이 자신이 태어난 마을 근처에서 일어났으며 그래서 자신이 직접 들어 알게 된 이 이야기를 기꺼운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한다.

들이었다. 케르시 지방의 주도인 카오르(Cahors)의 콘설(consul)들은 “그들이 충성스럽게 섬겨온 그들의 본연의 영주(naturel seigneur)인 프랑스국왕을 잃고… 그들이 모르는 외국인(estranger) 주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몹시 애통함”을 표명한다. 라로셀(La Rochelle)의 주민들 역시 같은 심정으로 프랑스국왕에게, 국왕의 지배 영역을 떠나 외국인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영국인들의 지배 아래 놓이느니 그들 재산의 절반을 매년 세금으로 내는 게 더 낫겠다고 탄원한다. 그들의 선의와 충정을 이해하지만 평화가 깨져 왕국에 큰 해악이 되지 않도록 조약의 이행 조치에 복종하라는 왕명을 받고, 이 도시의 유력인사들은 “우리는 입술로는 영국인들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만, 마음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Nous adouurerons les Anglois de levres, mais les cuers ne s'en mouveront ja)”라는 말로써 마지못해 복종하는 자신들의 착잡한 심경을 토로한다.<sup>10)</sup>

흑세자 에드워드(Edward the Black Prince)의 통치 아래 있었던 남서부 지방에서 아르마냐크 백작령은 영국의 지배에 대한 반항의 근거지였다. 아르마냐크 백작을 중심으로 한 가스코뉴(Gascogne) 지방의 여러 영주와 도시들이 흑세자의 무거운 과세에 반발하여 파리의 고등법원, 즉 프랑스 국왕에 호소한 사건은 흑세자의 소환과 이에 불응한 그의 영지에 대한 몰수 선언으로 이어져 결국 브레타니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재개되는 계기가 되었다.<sup>11)</sup> 마찬가지로 흑세자의 지배 아래 있던 리무쟁(Limousin) 지방의 주도 리모주(Limoges)는 1370년에 그에게 반기를 들고 프랑스 편으로 돌아섰다. 같은 해 8월 이 도시는 성문을 열고 베리 공작 장(Jean de Berry)과 부르봉 공작 등이 이끈 프랑스 군대를 맞아들여 성대히 환영하고 신서를 바쳤다. 하지만 이 반란은 한 달이 채 안 되어 진노한 흑세자의 군대에겐 진압되었고, 프루아사르에 따르면 남녀노소를 막론한 3천여 명의 주민이 무참하게 학살당했다.<sup>12)</sup>

트루아조약이 체결되고 충성의 대상이 확연히 분열된 1420년 이후의 시기에는 저항 움직임이 더욱 널리 그리고 빈번히 일어났다. 고바르(C. Gauvard)의 연구에 따르면, 트루아조약 직후 영국-부르고뉴파에 대한 저항은 왕국의 변경에서까지, 아니 역설적으로 그런 지역에서 더 먼저 일어났다. 예컨대, 왕국과 플랑드르 백작령의 경계에서 14세기 초부터 프랑스 국왕에 대한 충성을 지켜온 투르네(Tournai)의 대다수 주민은 헨트(Ghent)와의 교역로에 이해관계가 걸린 도시귀족이 부르고뉴파로 기울자 “도시는 국왕에 속한다”는 원칙으로 맞서며, 급기야 1423년 6월 혁명으로 수공업자들이 권력을 잡고 조합의 깃발들과 나란히 백합 문장의 깃발을 내걸어 국왕(샤를 7세)에 대한 지지로 복귀했다.<sup>13)</sup>

하지만 저항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지역은 왕국의 섭정 베드퍼드 공작(John of Bedford)의 지배 아래 있었던 노르망디였다. 일찍이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르페브르-퐁탈리스(G. Lefevre-Pontalis)는 1420년대에 노르망디의 수많은 숲들이 영국의 지배에 항거하는 ‘파르티잔 투쟁(guerre de Partisans)’의 본거지였다고 주장했다.<sup>14)</sup> 그에 따르면, 공통

10) The Online Froissart(<http://www.hrionline.ac.uk/onlinefroissart>), Besançon 864 fol. 225; P. Wolff, “Les Français du Moyen Age étaient-ils des 'patriotes'?”, *L'Histoire*, No. 37(sept. 1981), pp. 52-60.

11) Chron. Charles V, t. 2, p. 45-47; E. Perroy, “Edouard III d'Angleterre et les seigneurs gascons en 1368”, *Etudes d'histoire médiévale*(Paris, 1979). pp. 299-303; J. Favier, *La Guerre de Cent Ans*(Paris, 1980), pp. 314-325.

12) The Online Froissart, fols. 330r-332v.

13) C. Gauvard, “L'opinion publique aux confins des Etats et des Principautés au début du 15e siècle”, *Les principautés au Moyen Age*(Actes du 4e congrès de la Société des historiens médiévistes de l'Enseignement Supérieur, Paris, 1979). pp. 127-152; Id., “Comment l'amour de la France vint aux Français?”, *L'Histoire*, No. 52(janv. 1983), pp. 84-87.

의 은밀한 대의와 감정의 유대로 뭉친 이들, 이 “민족 이념(idée nationale)의 수호자들”은 영국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1417년 8월부터 가족과 친지, 마을을 떠나 우거진 숲속의 소굴에서 무리를 이루고, 영국인 점령자들과 그들에게 빌붙은 배신자들을 공격하는 일종의 게릴라 활동을 벌이며 “휴전도 자비도… 절망도 희망도 없는 이 전쟁”을 끈질기게 이어갔다.<sup>15)</sup>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면장 등의 여러 사법·행정 문서에서 이들은 좀 더 명시적으로 ‘반역자(traître)’, ‘국왕의 적(ennemi et adversaire du roi)’, ‘대역죄인(criminel de lèse-majesté)’ 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흔히 ‘비적(匪賊, brigand)’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들--이를테면 ‘도둑(larron)’, ‘노상강도(guetteur de chemin)’, ‘약탈자(pillard)’, ‘살인자(meurtrier)’ 따위--로 불리는 사람들 역시 정황상 모두 저항 가담자를 적용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영국의 점령 직후 배부된 충서증서(bullette de ligeance)<sup>16)</sup>를 찢어버리고 영국 왕에 대한 충성서약을 거부한 ‘애국자’로서, 촌락의 농부와 어부, 다양한 직종의 수공업자와 상인, 말단 관리와 변경에서 유입된 폐잔병에서 귀족과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계층에서 충원되었고, 일정한 조직과 규율(수령, 서약, 암구호 등)을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저항은 이렇게 생업과 일상을 희생하고, 게다가 추적과 고문과 처형의 위협을 무릅쓰는 용기와 결단으로<sup>17)</sup> 무장 투쟁에 나선 이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이들의 험난하고 고립된 생존은 광활한 숲과 미로 같은 수로, 깊숙한 내포(內浦)와 계곡처럼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한 주위 환경의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 그들의 투쟁에 동조하고 수시로 필수품과 정보를 제공해준 주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마을에 남은 이들의 가족과 이웃들은 발각될 경우 반란자와 똑같이 처벌받을 위협을 무릅쓰고 약속한 장소에 양식 등의 필수품을 가져다주었고, 마을 신부나 산지기 같은 이들은 이들에게 바깥세상 소식과 정찰 정보 등을 알려주었으며, 개중에는 변경에서 영국군과 대치하고 있는 프랑스 주둔군(garnison)과 내통하며 숲속 게릴라들의 연락책으로 활동한 사람들도 있었다.<sup>18)</sup> 1424년 8월, ‘제2의 아쟁쿠르(Azincourt) 전투’라 불릴 만큼 프랑스-스코틀랜드 군대의 처참한 궤멸과 학살로 끝나 ‘영국령 노르망디’를 기정사실로 만든 베르뇌유(Verneuil) 전투의 와중에서 일어난 페르슈(Perche) 지방 주민들의 봉기와 1435년 아라스(Arras)조약 이후 겨울 동안 캉 평야와 코(Caux) 지방, 비르(Vire) 계곡 일대에서 일어난 봉기는 노르망디 곳곳에서 끈질기게 이어진 이러한 저항 운동과 그 배후에 주민들의 은밀한 동조가 돌발적인 폭력사태로 분출한, 말하자면 ‘노르망디의 자크리(Jacquerie normande)’ 또는 ‘민족적 봉기(soulèvement national)’였다.<sup>19)</sup>

14) L. Lefevre-Pontalis, “La guerre de partisans dans la Haute-Normandie(1424-1429)”, *Bibliothèque de l'Ecole des Chartes*, t. 54(1893), pp. 475-521; Id., t. 55(1894), pp. 259-305; t. 56(1895), pp. 433-508; t. 57(1896), pp. 5-54; t. 97(1936), pp. 102-130. 또한 E. Bourassin, *La France anglaise, 1415-1450*(Paris, 1981), pp. 182-195, 231-255을 참조.

15) 저항 가담자들의 출신지 분포에 관한 한 조사에 따르면, 출신지가 알려진 처형자 134명 중 55명의 출신지가 반경 15km 이내, 100명이 30 km 이내, 125명이 50km 이내로 나타난다. R. Jouet, *La résistance à l'occupation anglaise en Basse-Normandie(1418-1450)*(Caen, 1969), pp. 79-83.

16) L. Lefevre-Pontalis, op. cit., *BEC*, t. 54(1893), p. 485; *Chronique du Mont-Saint-Michel (1343-1468)*, éd. S. Luce, 2 vols.(Paris, 1879 et 1883), t. I, Pièces justificatives, n. 2 참조.

17) 이들에겐 불가침권(droit d'asile)도 거부되었고, 살인범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며, 재산 몰수로 유가족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R. Jouet, *La résistance à l'occupation anglaise...*, pp. 53-54.

18) 플레스는 이렇게 ‘비적’으로 처형된 많은 사람들이 변경의 프랑스군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지하운동가(maquisards)’였다고 말한다. A. Plaisse, *La baronnie du Neubourg: Essai d'histoire agraire, économique et sociale*(Paris, 1963), p. 314.

19) L. Lefevre-Pontalis, op. cit., *BEC*, t. 56(1895), p. 489; t. 55(1894), p. 273; R. Jouet, *La résistance à l'occupation anglaise...*, pp. 62-63;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1405-1449*, éd.

그러나 르페브르-퐁탈리스가 그려낸 이 같은 ‘애국적인 프랑스’ 상은 다분히 단순화되거나 편향된 면이 있는 것이었다. 영불해협 건너편에서 같은 주제를 연구한 로우(B. J. H. Rowe)는 영국 점령기--특히 베드퍼드 공작이 통치한 1422-1435년 동안--노르망디에 관한 사료에서 ‘비적(brigand)’으로 지칭되거나 처형당한 사람들이 모두 샤를 7세의 당파였고 외국의 점령에 저항한 파르티잔이었다는 그의 주된 논거를 문제 삼았다.<sup>20)</sup> 그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에서 ‘비적떼’는 외적의 침입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1415년 이전부터 장기간의 전쟁과 내란에 따른 혼란과 피폐의 부산물로 상존한 현상이며, 따라서 그 동기 또한 정치적인 것--즉 외국인의 지배에 대한 증오나 샤를 7세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찍이 숲은 무법자들의 은신처였거니와, 특히 군인들에 의한 약탈과 파괴가 극심했던 이 시기에 이들을 피해서 또는 이들에 맞서서 무장을 하고 숲속으로 들어간 뒤로 비적질을 일삼게 된 무리들이 많았다.<sup>21)</sup>

요컨대, 영국군의 침입과 점령이 “이 같은 단순한 비적질에 애국심의 후광을 씌워주었다”는 것이 로우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단순한 도적은 교수형에 처한 반면 정치적인 반역죄인은 참수 후 교수되었으며, 이 후자의 경우 사료상 ‘비적(brigan)’, ‘적(ennemi et adversaire)’ 외에 으레 ‘반역자(traistre)’라는 명칭이 따라붙었다. 게다가 이 나중의 명칭은 충성서약을 하고 나서 이를 배신한 사람에게 적용되었고, 처음부터 충성서약을 하지 않고 저항한 사람은 ‘전쟁포로’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문서상의 ‘비적’ 및 그와 유사한 명칭들로 불리는 자들은 단순한 형사범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국령 노르망디의 숲을 무대로 한 파르티잔들의 저항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인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 문제는 다양한 사료에 수없이 등장하는 ‘비적들’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명칭들에 대한 엄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한 그 대상자 각각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세세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좀처럼 풀기 어려운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주에(R. Jouet)의 지적대로, 1418년 헨리 5세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주민에게 2월 27일까지 귀가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비적 및 우리의 적(brigans et inimicus noster)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것”<sup>22)</sup>이라고 포고한 구절이나, ‘비적’이라는 말이 ‘반역자’ 또는 ‘아르마나크파(armignaz)’라는 말과 아울러 쓰인 구절들은 당시 그 용어가 특정한 정치적 당파를 가리킬 수도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어가 서로 다른 현실들, 즉 영국의 점령 이전부터 존재했던 진짜 비적들과 그 이후 당국에 의해 그런 무리와 한통속으로 취급된 저항자들, 그리고 전자이기도 하고 후자이기도 한 사람들을 모두 지칭했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용어 문제를 떠나서 여러 정황 증거들은 대부분의 ‘비적’을 파르티잔으로 보는 해석도, 그렇다고 그 둘을 전혀 별개로 보는 해석도 너무 과장되거나 편협한 것임을 추론케 한다. 먼저 앞의 해석은 비적들로 인한 공포가 당시의 문서들(특히 사면장)에서 과장되었을 가능성

C. Beaune(Paris, 1990), pp. 213-214; *Chronique du Mont-Saint Michel*, t. I, Pièces juscatives, n. 31.  
20) B. J. H. Rowe, “John Duke of Bedford and the Norman 'Brigands'”,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47(1932), pp. 583-600.

21) *Chronique du religieux de Saint-Denys contenant le règne de Charles VI de 1380 à 1422*, éd. et trad. L. F. Bellaguet, 6 Vols.(Paris, 1839-1852), t. 4, pp. 456-457.

22) “sub pena et periculo quod si quis eorum ad diem illum in domo sua hujus non inventus,, extra proteccionem nostram ponatur et tanquam brigans et inimicus noster tenetur et punatur.” R. Jouet, *La résistance à l'occupation anglaise...* p. 19에서 제인용.

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곳곳에서 매우 심각하면서도 일상적인 현실이었음을 무시하고 있다.<sup>23)</sup> 루이스(P. S. Lewis)의 표현을 빌리면, “비적질은 그 단어가 열렬한 애국심과 동의어가 되기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었다.”<sup>24)</sup> ‘비적(들)’은 백년전쟁 시대에 쓰여진 많은 연대기와 사법문서들에서 아마도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였다. 일례로 ‘파리의 부르주아’는 오르세(Orsay)와 같은 파리 부근의 성까지 “사라센인들보다 악독한” 도적들이 들끓었으며, 그래서 1426년 정초부터 이런 “비적떼(larrons brigands)”에 대한 농부들의 원성으로 파리 프레보(prévôt)가 부대를 이끌고 나아가 200여 명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한다.<sup>25)</sup> 또한 점령기에 노르망디 삼부회에 요구된 많은 세금과 농민들의 부역이 대부분 비적떼의 소탕을 명분으로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가는 상인들이 호위대를 거느려야 할 만큼 치안은 여전히 불안했고, 숲 주변에 위치한 토지들이 하릴없이 방치되었다. 예컨대, 알랑송에서는 숲 부근의 토지가 임차인이 없어 6년 동안 임차인이 없어 아무런 수입을 내지 못했으며, 너부르(Neubourg) 영지에서는 주민들이 숲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아 1429년부터 숲에 관한 벌금 수입이 아예 없었다.<sup>26)</sup>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항 움직임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점령 당국은 이들의 목에 6리브르(l. t.)라는 큰 현상금을 내걸었고,<sup>27)</sup> 이들에게 “은밀히… 식량과 그 밖의 필수품을 가져다주는” 자들을 극형에 처하겠다고 포고했으며, 또 점령지 곳곳에 소규모의 수비대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런 사실들은 그들의 저항이 실제로 점령 당국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저항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sup>28)</sup> 그러나 이 같은 저항이 한결같이 애국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런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증거로,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리지외(Lisieux) 주교 토마 바쟁(Thomas Basin)은 “비열함이나 영국인들에 대한 증오에서건, 또는 남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욕망에서건… 자신들의 집과 밭을 떠나 범망을 피해 살려는 자들이 아주 많았다”고 증언한다. 또한 이들을 없앨 방도를 묻는 영국인들에게 “모든 영국인들이 프랑스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한 사제의 답변을 옮기고는, 실제로 “영국인들이 노르망디에서 쫓겨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 그 지방은 이 페스트로부터 놓여났다”고 기술한다.<sup>29)</sup>

23) N. A. R. Wright, “Pillagers and Brigands in the Hundred Years War”, *Journal of Medieval History*, vol. 9(1983), pp. 15-24.

24) P. S. Lewis, *Later Medieval France: The Polity*(New York, 1968), p. 287. 루이스는 1363-1384년 동안 오베르뉴(Auvergne)와 랑그독 일대를 휩쓴 튀생(Tuchins) 반란의 가담자들도 영국인들을 공격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은 없었다는 것을 한 가지 근거로 든다. 튀생 반란에 관해서는 M. Boudet, *La Jacquerie des Tuchins, 1363-1384*(Paris, 1895) 참조.

25)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pp. 182-183, 201, 223-224.

26) R. Jouet, *La résistance à l'occupation anglaise...*, pp. 67, 85-88; A. Plaisse, *La baronnie du Neubourg*, pp. 313-315. 1430년대 이후의 사회불안으로 인한 노르망디 인구 및 토지 수입의 격감에 관해서는 C. T. Allmand, “The Lancastrian Land Settlement in Normandy, 1417-1450”, *Economic History Review*, 2e ser., vol. 21(1968), pp. 461-479; M. K. Jones, “War on the Frontier: the Lancastrian Land Settlement in Eastern Normandy, 1435-1450”, *Nottingham Medieval Studies*, vol. 33(1989), pp. 104-131 참조.

27) 6 l. t.는 영국군의 봉급으로 환산하면 각각 기병기사의 4.5일치, 평기사의 9일치, 기병(homme d'armes à cheval)의 18일치, 보병(homme d'armes à pied)의 27일치, 궁수의 36일치 봉급에 해당한다. R. Jouet, *La résistance à l'occupation anglaise...*, pp. 46-47.

28) 예컨대, 고위성직자나 관리, 몰수 재산의 시혜자 등 영국에 협력한 인사들이 납치를 당하거나, 이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왕에 대한 신서(aveu et dénombrement)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기도 했다. Ibid., pp. 275-276, 280.

29) Thomas Basin, *Histoire de Charles VII*, 2 vol.(Paris, 1964), t. I, pp. 106-111; P. S. Lewis “La

하지만 이러한 동기가 전부도 아니었고 주된 것도 아니었다. 대체로 노르망디의 농민들이 외국인 점령자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었음은 사실이라 해도, 승리한 지배자들이 안정과 평화를 보장했다면 그 지배를 어쨌든 감내했을 것이다. 그러나 헨리 5세와 베드퍼드 공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령 당국은 온갖 부류의 군인들에 의한 “억압과 폭력(mould d'oppressions et molestacions)”, “가난한 민중에 대한 약탈과 도적질, 그 밖의 착취(pilleries, roberies ou aultres extorcions au povre peuple)”를 뿌리 뽑는 데 실패했으며,<sup>30)</sup> 바로 이것이 점령자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데 실패한 영국인들이 모든 혼란을 몰고온 침입자들로 지목될 때, 민중의 모든 증오가 그 침입자들에게로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주에의 표현을 빌리면, 이들은 “프랑스를 ‘위해서’ 무기를 들기 이전에 영국인들에 ‘반대하여’ 무기를 들었다.”<sup>31)</sup> 처음에는 아마도 극소수였을 파르티잔들 주위로 이렇게 불만을 품게 된 자들이 가담하거나 그들의 은밀한 원조자가 되었을 것이며, 이제 새로운 희망의 근거로 떠오른 샤를 7세의 군대가 다가올 때처럼 유리한 기회에는 반란과 폭동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결국 다른 무엇보다도 만성적인 전쟁과 혼란, 그리고 이를 수습하고 안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르지 못한 점령자의 무능이 잔다르크의 활약이나 샤를 7세의 축성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숲속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주로 농민들--“가난하고 하찮은 신분의 사람들(pouvres gens et de petit estat)”, “평범한 마을 사람들(simples gens de village)”--이 저항의 주력을 이룬 것은 바로 이들이 그러한 혼란과 약탈의 가장 직접적이고 주된 피해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sup>33)</sup> 게다가 이들은 마을공동체의 조직과 장기간의 전쟁과 혼란 속에 더욱 활발해졌을 자경 활동을 통해 쉽사리 그러한 항쟁에 가담할 수 있는 계층이었던 것이다.<sup>34)</sup>

### III. ‘협력하는’ 프랑스?

농민들과 달리 귀족들은 저항을 택함으로써 물질적으로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영국령 프랑스’의 저항에 가담한 귀족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들의 전력이나 행적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거나 또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고위 귀족 및 관직자들은 샤를 7세의 군대와 궁정, 각각 푸아티에(Poitiers)와 부르주에 자리잡은 고등법원과 회계법원에 모여 있었다. 물론 이 프랑스국왕을 위해 그의 군대에서 복무한--자원해서든 아니면 동원되어서든--귀족들도 많이 있었다.

노르망디에서도 숲속에 들어간 ‘비적떼’의 수령 노릇을 한 시골 귀족이 없지는 않았지만, 점령 당국에 대한 반란 행위로 재산을 박탈당한 영주의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sup>35)</sup> 오

‘France anglaise’ vue de la ‘France française’”, *La ‘France anglaise’ au Moyen Age*(Actes du 111<sup>e</sup> Congrès National des Sociétés Savantes)(Paris, 1988), t. 1, pp. 31-40..

30) R. Jouet, *La résistance à l'occupation anglaise...* pp. 33-37; B. J. H. Rowe, “Discipline in the Norman Garrisons under Bedford, 1422-1435”,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46(1931), pp. 194-208.

31) Ibid., p. 37; A. Plaisse, *La baronnie du Neubourg*, p. 315.

32) G. Minois, “La France sous l'occupation anglaise”, *L'Histoire*, No. 150(déc. 1991), p. 26.

33) 주에의 연구에 따르면, 노르망디에서 저항에 가담하여 처형된 자들 중 출신지가 알려진 165명 가운데 도시 출신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Ibid., p. 82-83.

34) J. Favier, *La Guerre de Cent Ans*(Paris, 1980), p. 533.

35) R. Jouet, *La résistance à l'occupation anglaise...* p. 57. 비적떼의 수령들에 관해서는 L.

히려 전반적으로 노르망디 귀족과 점령 당국 사이의 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이거나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은 그럴 만한 이유도 없지 않았다. ‘영국령 프랑스’에 대한 헨리 5세와 섭정 베드퍼드 공작의 통치는 억압적이기보다는 매우 관대하고 신중한 편이었다. 이들은 외국인 왕이나 총독이 아니라 정당한 프랑스 군주, 노르망디인들의 영주로서 통치하고자 했으며, 그래서 잉글랜드의 제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민들의 법과 관습, 특히 지방의 자유와 특권을 명시한 1315년의 ‘노르망디 헌장(Carta Normannorum)’을 존중했다.<sup>36)</sup> 예컨대, 주로 군사를 관장하는 바이이(bailli)는 영국인을 임명하되,<sup>37)</sup> 그 밑에서 민사행정을 담당하는 비콩트(vicomte)들은 프랑스인 관리를 임용하고, 노르망디 국고(Echiquier)와 세네샬(sénéchal) 직책을 부활시키는 등 통치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게다가 잉글랜드 의회의 전통을 체득했던 베드퍼드 공작은 1382년 이래로 소집된 적이 없는 빈사상태의 노르망디 삼부회를 부활시켰다. 그는 삼부회를 수시로 소집하여 과세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지출과 배분, 그리고 때론 입법의 권한을 부여했으며, 각 지역의 유력자들(notables)과 세금의 할당액을 협의하는 등 지방 삼부회와 유력자들을 통치의 협력자로 활용하고 존중했다.<sup>38)</sup>

적어도 이 같은 노르망디의 통치 행태를 놓고 볼 때, 하나의 신분으로서의 귀족이 점령 당국의 지배에 저항할 이유는 하층민들보다는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오히려 귀족들의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봉건적 또는 사적인 이해관계 및 유대관계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부분의 귀족들에게 군주에 대한 충성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여전히 봉건적 당파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는 부르고뉴와 피카르디(Picardie) 지방의 귀족들이 이 시기에 ‘부르고뉴 왕조’에 대한 충성을 별다른 동요 없이 유지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단적인 예로 피카르디의 롱그발 영주로 부르고뉴 공작에게 충성한 샤를(Charles de Longueval)은 아쟁쿠르에서 그의 부친(Jean)이 전사하고 그 자신 또한 부상을 입었으나, 1419년 부르고뉴 공작이 영국과 동맹한 이후로는 그 휘하의 많은 귀족들과 더불어 영국 편에 가담하여 싸웠다.<sup>39)</sup>

또 한편으로, 귀족들에게는 어떻게든 가산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관심사였다. 예컨대, 장 드로피냐크(Jean de Roffignac)는 샤를 7세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여 리무쟁에 소재한 가산을 보전하는 동시에 그의 아들은 헨리 6세에게 충성을 서약케 하여 니베르네(Nivernais)에 소재한 가산을 지키도록 했다. 같은 이유로 샤토빌랭(Châteauvillain) 가의 두 형제는 서로 반대편에서 복무했으며, 루브루아-생시몽(Rouvroy-Saint-Simon)의 영주로 장 샤피르의 시종(chambellan)이었던 고셰(Gaucher)의 동생 질(Gilles)은 샤를 7세 편에 가담했다. 또한 1427년 영국인들이 라 트레무아유(La Trémoille) 가의 한 아들(Georges)에게서 몰수한 재산은 그의 형(Jean)에게 하사되었다.<sup>40)</sup>

성직자, 특히 고위성직자 신분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한편으로 세계시민적 성향과 다른

Lefevre-Pontalis와 R. Jouet의 연구를 참조.

36) P. Contamine, “The Norman ‘Nation’ and the French ‘Nation’ in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D. B. and A. Curry ed., *England and Normandy in the Middle Ages*, pp. 215-226.

37) 1420년부터 헨리 5세는 노르망디의 8개 바이아주(Cotentin, Caen, Alençon, Evreux, Rouen, Caux, Gisors, Mantes)에 영국인을 임명하고, 1421년 5,200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모든 군사행정을 장악했다. G. Minois, “La France sous l’occupation anglaise”, pp. 20-28.

38) B. J. H. Rowe, “The Estates of Normandy under the Duke of Bedford, 1422-1435”,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46(1931), pp. 551-578.

39) L. Lefevre-Pontalis, op. cit., *BEC*, t. 56(1895), pp. 449-450.

40) Ibid., 452-453; P. S. Lewis, *Later Medieval France*, p. 68.

한편으로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쫓았다고 할 수 있다. 귀족 신분과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저항을 택함으로써 잃을 것이 많고, 순응함으로써 얻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르페브르-퐁탈리스와 주에가 언급하듯이, 변경지대의 프랑스군과 내통하며 저항에 가담하거나, 새로운 통치자를 위한 공개 기도를 거부한 성직자도 극소수 있기는 했지만, 노르망디의 성직자들은 전반적으로 점령자에게 순응하는 편에 서서 그들의 지위와 수입(성직록)을 보존했다.<sup>41)</sup>

게다가 이 신분에 대한 헨리 5세와 베드퍼드 공작의 정책은 귀족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욱 우호적이었다. 점령자들은 노르망디인의 관직과 마찬가지로 성직에 영국인을 앉히는 일을 삼가고 그대로 보존해주었거니와,<sup>42)</sup>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만한 통치를 위해서는 유능한 행정 인력이자 주민들의 여론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성직자들의 순종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성직록 수입과 승진을 위한 후견은 그러한 순종과 협력을 끌어내기에 좋은 당근이었다. 실제로 많은 소교구 사제들이 점령 초기부터 새로운 체제를 수용했을 뿐 아니라 마을 교구민들의 충성서약을 위해 그들을 왕이나 그의 위임자들 면전에서 이끌었다. 이 같은 순종의 예는 고위성직자들에게서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다. 불굴의 “몽생미셸(Mont-Saint-Michel)이 영국인들에 대한 저항의 보루로 버티고 있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도원의 원장인 로베르 졸리베(Robert Jolivet)는 루앙에서 적에게 봉사하고 있었다.”<sup>43)</sup>

한편 오랜 동안 ‘민족반역자’로 낙인찍혀온 피에르 코송(Pierre Cauchon)의 사례는 고위 성직자의 ‘협력’ 뒤에 좀 더 복잡한 동기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44)</sup> 그가 파리대학에 몸담고 있던 시기는 교회의 ‘대분열’ 사태를 우려하고 화합과 통일을 촉구하는 지성인들의 목소리가 높아가던 때였다. 교황 클레멘스 7세의 후임자인 베네딕투스 13세에게 실망한 파리대학과 프랑스 성직자회의가 1398년 아비뇽 교황청에 대한 ‘순종의 철회(soustraction d'obédience)’를 결의했을 때, 부르고뉴 공작은 ‘순종의 회복’을 주장한 오를레앙 공작과 반대로 이러한 결의를 지지했고, 이때부터 부르고뉴 공작과 파리대학의 유착이 시작되었다.<sup>45)</sup> 비잔티움 황제가 파리와 런던까지 순방하며 투르크에 대한 십자군을 호소할 만큼 기독교세계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교회의 분열을 종식하고 이교도의 위협을 물리치는 일이었다. 니코폴리스(Nicopolis)의 십자군 전장에 나아가 ‘상피르(겉 없는 사람)’라는 별명까지 얻고, 게다가 교회의 통일이라는 대의의 지지자가 된 부르고뉴 공작은 코송 같은 성직자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1418년 부르고뉴파의 수도 입성과 이듬해 공작의 암살을 계기로 코송은 돌이킬 수 없는 부르고뉴-친영국파가 되어 출세의 사다리를 올랐고, 마침내 보베 주교 자리에까지 올랐을 때 잔다르크라는 ‘이단 혐의자’의 재판관을 떠맡게 된 것이다.<sup>46)</sup>

결국 코송 주교에게는 어떤 현실의 조국에 앞서 이념의 조국인 교회가 있었던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잔다르크 재판의 주역을 맡은 파리대학은 당시의 현안들을 보편적 기독교세계의

41) R. Jouet, *La résistance à l'occupation anglaise...*, pp. 73-77; C. Allmand, “The English and the Church in Lancastrian Normandy”, D. B. and A. Curry ed., *England and Normandy in the Middle Ages*(London, 1994), pp. 287-297.

42) B. J. H. Rowe, “The Estates of Normandy...”, p. 561.

43) C. Allmand, “The English and the Church in Lancastrian Normandy”, pp. 287-289.

44) 코송의 전기로는 F. Neveux, *L'évêque Pierre Cauchon*(Paris, 1987); E. Bourassin, *L'évêque Cauchon*(Paris, 1988) 참조.

45) 성백용, 「14세기 후반-15세기 초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 제4장 참조.

46) 필리프 볼프는, 코송은 “새로운 ‘민족들의 유럽(Europe des nations)’ 앞에 사라진 한 세계의 대표자로 나타난다”고 결론짓는다. P. Wolff, “Faut-il réhabiliter Cauchon?”, *L'Histoire*, No. 16(oct. 1979), pp. 56-63.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의 특권단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형적인 사례이다.<sup>47)</sup> 파리대학은 점령 당국의 가장 두드러진 협력자이자 수혜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학은 1420년 트루아조약의 성안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서약했으며, 그 결실인 ‘이중왕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1431년 어린 헨리 6세가 대관식을 위해 파리에 입성했을 때 니콜라 미디(Nicolas Midi)는 대학을 대표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국왕의 기쁘고 복된 즉위를”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를 “우리의 주인 국왕의 딸(domini nostri regis filia primogenita)인 대학의 아버지, 수호자, 특별한 보호자”로 부른다.<sup>48)</sup> 특별한 기회마다 대학이 통치자에게 읍조린 이러한 감사와 찬양 기도 덕분에 파리대학은 특권과 번영을 누렸다.<sup>49)</sup>

이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 파리대학의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은 자크 베르제(Jacques Vergers)가 논의한 바와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sup>50)</sup> 대학의 첫 번째 관심사는 당연히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점점 더 절대화되어가는 국가 권력 앞에서 새로운 현실과 타협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만 했기에, 대학은 그것을 보장해줄 가장 유력한 보호자를 찾기 마련이었다. 둘째는 평화였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서 대학은 늘 강경파를 질시하고 온건파를 두둔했다. 그래서 그들은 호전적인 오를레앙-아르마냐크파와 잔다르크를 비난했고, 트루아조약을 지지하고 점령자 편에 섰으며, 이 점령자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자 다시 아라스조약을 중재하고 샤를 7세 편으로 돌아섰다. 이들에게 어느 왕조가 프랑스 왕위와 영토를 상속받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였다. 아라스조약 직전까지 왕국의 분할을 제안했던 대학은 1439년 오를레앙 삼부회에서도 국왕에게 노르망디와 기엔 지방을 영국에 내주고 전쟁을 끝낼 것을 건의했다.

새로운 통치자가 원하던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것 외에, 파리대학이 점령자와의 밀월관계를 끝내게 된 좀 더 직접적인 계기는 1432년 베드퍼드 공작이 노르망디의 칸에 대학을 창설한 것이었다. 파리대학은 그동안 “우리 학문의 소실과 이 선량한 도시의 인구 감소”를 이유로 이 계획을 완강히 반대해왔거니와, 사실 하나의 동향단(natio)을 구성하던 노르망디에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학생 충원과 재정 등 여러 면에서 대학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이 무렵부터 프랑스군의 노르망디 재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파리대학은 이제 샤를 7세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sup>51)</sup>

수도 파리의 순응과 협력에 대한 증언은 부르고뉴파인 익명의 ‘파리 부르주아’와 같은 목격자들을 통해서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다. 그에 따르면, 1423년 2월 “파리의 모든 사람들, 즉 부르주아, 주민, 마차꾼, … 하녀와 수도사들까지… 프랑스 섭정인 베드퍼드 공작에게 선량하고 충성스러우며 언제 어디서나 복종하고, 스스로 프랑스왕이라 칭하는 샤를과 그 일당을 온힘을 다하여 해칠 것을 서약했다.” 또한 베드퍼드 공작이 샤를의 군대를 무찌르고

47) 당시 신학자 및 교회법학자들에 의해 지배되던 파리대학은 잔다르크의 재판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다. 1403년 총장(rector)을 지낸 코송을 비롯하여 14명의 심문관 중 12명이 그 대학 선생이었으며, 소추와 판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잔다르크 재판에 관해서는 J. Quicherat éd., *Procès de condamnation et de réhabilitation de Jeanne d'Arc*, 5 vols.(Paris, 1841-1849); Id., *Aperçu nouveaux sur l'histoire de Jeanne d'Arc*(Paris, 1850) 등을 참조.

48) J. Verger, “The University of Paris at the End of the Hundred Years' War”, J. Baldwin & R. Goldthwaite ed., *Universities in Politics: Case Studies from the Late Middle Ages and Early Modern Period*(Baltimore, 1972), pp. 47-78.

49) 1428년 6월, 2명의 영국인을 포함한 4명의 박사가 교회법학부에 영입될 때 베드퍼드 공작이 몸소 축하연을 주재했다. J. Favier, *La Guerre de Cent Ans*, p. 534.

50) J. Verger, “The University of Paris…”, pp. 47-78.

51) Ibid., pp. 57, 71; J. Favier, *La Guerre de Cent Ans*, p. 535.

개선할 때마다 파리 시내에서는 테데움이 울려 퍼지고 긴 행렬이 벌어졌다.<sup>52)</sup> 어쩌면 파리의 상인조합장이었던 에티엔 마르셀(Etienne Marcel)의 여섯 아들 중 하나일지도 모를 장 마르셀(Jehan Marceau)은 노골적인 ‘협력’으로 치부에 성공한 기회주의적 사업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파리에서 기반을 닦고 루앙에 정착한 그는 그는 헨리 5세와 베드퍼드 공작에게 군사자금을 대부하는 등 “충직한 봉사(bons et agreables services)”의 대가로 “부채 및 반란으로 몰수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외국 화폐와 소금 판매에 투기하는 등 엄청난 특혜와 수완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sup>53)</sup>

하지만 대다수 수도의 부르주아들은--물론 다양한 종류의 집단과 개인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렸을 터이지만--파리대학과 비슷하게 주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갈망 때문에 부르고뉴-영국의 지배를 받아들였음에 틀림없다. 게다가 1413년 카보쉬앵(Cabochiens)의 반란을 전후로 한 내란에서 부르고뉴 공작은 국정 및 조세 개혁에 대한 열망의 대변자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특히 대상인들에게는 공작의 영지인 플랑드르와의 교역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대한 관심사였다.<sup>54)</sup> 무엇보다도 부르주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 생업활동의 전제조건인 평화였다. 어느 당파의 지배라도, 심지어 영국인의 지배라도 전쟁보다는 훨씬 더 나았다. 1431년 헨리 6세의 파리 입성식 때 행렬이 지나가는 연도에서 다채로운 볼거리를 연출한 파리 주민들이 환영한 것은 어린 외국인 왕의 즉위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리라 기대한 평화, 시장과 사업의 재개였을 것이다.<sup>55)</sup> 하지만 간절히 원하는 평화는 점점 더 멀어져갔고, 그와 더불어 수도의 민심도 점령자들을 떠나 ‘본연의 영주’ 샤를 7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아라스조약 이후부터 익명의 ‘파리 부르주아’에게는 이제 아르마냐크파가 ‘프랑스인들’이고 영국인들은 ‘비적들’이 되었다.<sup>56)</sup>

##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백년전쟁 말기 프랑스의 상황에서 저항과 협력을 곧 민족의식이나 애국심의 증표로 간주하는 시각이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저항은 1940년대 중엽의 레지스탕스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먼저 외국인의 지배에 대한 혐오나 애국적 동기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저항의 주된 동기는 다양한 부류의 군인들에 의한 약탈과 파괴에 대한 반발이었으며, 따라서 저항의 대상은 영국인이기보다는 모든 약탈자들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샤를 5세의 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해산된 부대들과 떠돌이 군인들을 모두 영국인으로 취급하는 습성이 있었다는 장 파비에(J. Favier)의 지적은 새겨들 필요가 있다.<sup>57)</sup> 거꾸로 평화에 대한 갈망은 점령 당국에 대한 순응과 협력의 동기이기도 했으며, 그러한 기대가 환멸로 바뀌어갈 때 점령자에 대한 냉담함과 적대감이 시작되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세의 속담처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나라를 차지할 것(Qui tient la paix, il tient le pays)”이었다.<sup>58)</sup>

52)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pp. 198, 216.

53) M. Mollat, “Un 'collaborateur' au temps de la guerre de Cent Ans: Jehan Marcel, changeur à Rouen”, *Annales ESC* t. 1(1946), pp. 36-42.

54) J. Favier, *Paris: Deux mille ans d'histoire*(Paris, 1997), pp. 787-788.

55) 헨리 6세의 입성식에 관해서는 “Document relatif à l'entrée du roi d'Angleterre Henri VI à Paris en 1431”, *Revue des études historiques*, nouv. sér. t. 75(1909), pp. 411-415.

56)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pp. 344.

57) J. Favier, *La Guerre de Cent Ans*, p. 465.

58) P. S. Lewis “La ‘France anglaise’ vue de la ‘France française’”, p. 33.

또 하나 염두에 뒤야 할 것은 ‘영국령 프랑스’의 많은 주민들이 점령의 무게를 그리 크게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래의 ‘부르고뉴령 프랑스’의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 파리와 같은 곳에서도 주민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영국인의 지배 아래 있다기보다는 부르고뉴 공작, 즉 프랑스인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점에서는 ‘아르마냐크파’로 불린 샤를 7세의 당파가 곧 ‘반란자’였던 것이다.<sup>59)</sup> 사실, 파리의 주민들에게는 프랑스-영국의 전쟁보다는 아르마냐크파-부르고뉴파의 대립이 더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헨리 5세와 베드퍼드 공작의 통치는 장 상피르의 시대부터 부르고뉴파로 기운--그리고 아르마냐크파를 혐오하는--파리 주민들의 정서에 편승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파리는 영국인들에게 제2 왕국의 진정한 수도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sup>60)</sup>

주민들이 점령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 앞서도 논의했듯이, 베드퍼드 공작의 통치는 가혹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온건한 편이었다.<sup>61)</sup> 게다가 파리에서 수백에 불과한 영국인 체류 인원은 수도가 점령당했다는 인상을 주기에는 너무나 적었다.<sup>62)</sup> ‘세 개의 프랑스’ 통치자들의 가문들 사이에 서로 결연관계가 있었다는 것 또한 그러한 의식을 무디게 했을지 모른다.<sup>63)</sup> 무엇보다도 ‘이중왕국’의 첫 국왕인 헨리 6세는 한 세기 전의 에드워드 3세처럼 발루아가의 경쟁자로서 프랑스 왕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외조부인 샤를 6세에 의해 지명된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였다.<sup>64)</sup> 그랬기 때문에 모든 지식의 원천을 자처하는 파리대학의 선생들에게, 두 왕국의 왕위를 합치기로 한 트루아조약은 이제껏 갈라져 있던 두 민족을 하나의 군주 아래 통합하는 탁월한 평화의 해결책으로 보였던 것이다.<sup>65)</sup>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염두에 뒤야 할 것은 두 왕국의 매우 긴밀한 관계사이다. 노르만 조와 플랜태지니트조의 뿌리, 그리고 영토와 혈통 면에서 서로 뒤얽혀온 두 왕국의 역사를 고려하면 두 왕국의 통합은 단지 두 왕위의 통합일 뿐이었다. 영국 역사가들의 ‘수정주의적’ 견해가 제시하듯이, ‘이중왕국’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었으며,<sup>66)</sup> 따라서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에게 두 왕조 간의 싸움은 선과 악, 흑백의 대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다 똑같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지닌 두 기독교 왕 사이에서, 신은 어쨌든 영국왕들에게 전투에서의 승리를 선사함으로써 그들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

59) A. Leguai, “La ‘France bourguignonne’ dans le conflit entre la ‘France française’ et la ‘France anglaise’(1420-1435)”, *La ‘France anglaise’ au Moyen Age*, pp. 41-52. 1429년 오를레앙의 포위가 장 기화되지 주민들은 부르고뉴 공작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조건으로 영국군에게 항복하는 것을 고려한 적도 있었다. *Chronique de la Pucelle attribuée à Guillaume Cousinot*, éd. Vallet de Viriville(Paris, 1859), p. 236.

60) G. L. Thompson, “Le régime anglo-bourguignon à Paris: facteurs idéologiques”, *La ‘France anglaise’ au Moyen Age*, pp. 53-60.

61) 점령기에 파리에서 몰수된 가옥 550-600채 중 영국인 소유로 넘어간 것은 약 30채에 불과했다. Ibid., p. 56.

62) 예컨대 바스티유(Batille)에 주둔한 존 파스탈프(John Fastolf) 휘하의 병력은 한때 25명에 불과했다. G. Minois, “La France sous l’occupation anglaise”, p. 24.

63) 베드퍼드 공작과 샤를 7세의 맹장인 리슈몽(Richemont) 원수, 역시 샤를 7세 편에 섰던 부르봉 공작 샤를(Charles de Bourbon)은 모두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 르봉의 매제들이었다. J. Favier, *La Guerre de Cent Ans*, p. 474.

64) 헨리 6세의 모후와 왕비는 모두 프랑스인이었고, 프랑스어는 그의 모국어이기도 했다.

65) J. Verger, “The University of Paris...”, p. 66.

66) 이에 관해서는 P. Contamine, “La ‘France anglaise’ au XVe siècle: Mythe ou réalité”, *La ‘France anglaise’ au Moyen Age*, pp. 17-29; Id., “De Guillaume le Conquérant à Jeanne d’Arc: la formation des Etats nationaux”, Fr. Bédarida, Fr. Crouzet, D. Johnson éd., *De Guillaume le conquérant au Marché commun*(Paris, 1979), pp. 23-34.

않았을까?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식인들이 영국의 통치가 발루아조의 통치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sup>67)</sup> 하지만 그 당시의 민족관념은 이 같은 ‘이중왕국’의 구상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구상의 궁극적인 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은 강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그렇다면 15세기 초 프랑스인들은 과연 민족의식이 있었는가 또는 애국적이었는가? 피에르 코송에 뒤이어 보베 주교가 되고, 후일 잔다르크의 복권재판을 주재한 장 주브넬(Jean Juvenel des Ursins)은 1445년에 지난 시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즉, 먼저 “그들의 토지와 장원을 버리고 한결같이 국왕의 당파를 견지한” “선량하고 충성스러운 프랑스인들(bons et loyaux francois)”이 있었고, 또한 “영국인들을 돕기는 했으나 결코 좋아하지는 않았”으며, “국왕과 화해한 이후로는 국왕과 그의 적들의 적들에게 선량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여”온 부르고뉴 공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으며, 끝으로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인들보다 더 진정하고 완전한 영국인들,” 그래서 “여전히 그 마음과 충정이 적과 함께하고 있다고” 의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한다.<sup>68)</sup> 장 주브넬은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잣대로 “선량하고 충성스러운 프랑스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준별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령 프랑스’에서의 ‘저항’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표면적으로 관찰된 바를 근거로 말하자면, 그러한 충성심은 신분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귀족, 성직자, 파리대학, 상층 부르주아의 경우처럼 신분적 특권이나 공동단체(corporation), 또는 봉건적·사적 유대관계와 같은 보호막이 두터운 집단일수록 시험을 받고 분열되기가 쉬웠다. 반면에 어떤 당파적 선택을 직접적으로 요구받지 않고 또 그런 선택에 달려 있는 이해관계가 희박한 하층민들은 그러한 시험과 분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변방 농부의 딸인 잔다르크, 그리고 파리의 성벽 위에서 그녀를 “탕녀, 창녀”라고 모욕한 파리의 주민들과 이 광경을 기록한 익명의 ‘파리 부르주아’,<sup>69)</sup> 그녀를 재판정에 인도하고 방관한 부르고뉴파 귀족들, 그리고 그녀를 이단자로 정죄한 코송 주교와 파리대학의 선생들. ‘잔다르크 사건’은 그러한 대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67) C. T. Allmand, *La guerre de Cent Ans*, p. 203.

68) *Ecrits politiques de Juvénal des Ursins*, éd. P. S. Lewis, 3 vols(Paris, 1978-1985), t. 1, pp. 455-456; P. S. Lewis, *Later Medieval France*, pp. 68-69.

69) *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 pp. 266.